

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8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8. .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재원조달의 주요 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
-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혜택의 근거를 확립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.

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,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~④(생략)	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~④(현행과 같음)
(신설)	⑤ <u>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 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.</u> <u>이 경우, 성실납세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
⑤	⑥